

2024년도 검단소방서 특정(부분)감사 결과

2024. 3.



INCHEON FIRE DEPARTMENT

인천소방본부

소방감사담당관

2024년도 검단소방서 특정(부분)감사 결과

1 감사개요

□ 기 간

- 2024. 2. 19. ~ 2. 23. / (5일간)

□ 감 사 반

- 총 괄 : 감사팀장
- 반 원 : 감사조정관 등 4명

□ 감사범위

- '23. 1월 개서 이후 처리한 예산·회계 및 소방건축민원 분야
* 2023. 1. 30. ~ 2024. 1. 31.(1년간)

□ 중점 감사대상

- 회계 관리의 적정성, 소방 민원 처리 실태 등
- 행정업무 처리 등과 관련한 직원 불편 사항 등

2 감사 결과

【 감사총괄 】

- 행정상 조치 6건
 - 시정 : 1건
 - 주의 : 5건
- 현지시정 조치 5건

3 감사결과 처분요구

□ 지적사항 총괄표

(단위 : 건, 천원, 명)

총계	행정상 조치(건)				재정상 조치(금액)				신분상 조치(인원)				현지 시정
	소계	시정	주의	권고	소계	회수	환급	기타	소계	징계	경고	주의	
11	6	1	5	-	-	-	-	-	-	-	-	-	5

□ 처분요구 사항

연번	분야	제 목	행정상 조치	재정상조치		신분상 조치
				방법	금액(원)	
1	예산 회계	▷ 세입세출외현금 회계 처리 부적정	주의	-	-	-
2	〃	▷ 특근매식비 집행 부적정	주의	-	-	-
3	〃	▷ 세출예산(사무관리비) 집행 부적정	주의	-	-	-
4	〃	▷ 소방장비(차량) 관리 부적정	시정	-	-	-
5	건축 민원	▷ 소방공사감리 결과보고서 제출 서류 부적정	주의	-	-	-
6	〃	▷ 소방시설 성능시험조사표 제출 서류 부적정	주의	-	-	-

□ 현지시정 사항

연번	분야	제 목	처분요구종류
1	예산 회계	상품권 구매 및 관리 부적정 ▷ 인천광역시 상품권 구매 및 관리 규정에 따라 인천시 홈페이지에 공개함	현지시정
2	예산 회계	물품관리 부적정 ▷ 물품관리시스템 미등재 물품 등록 및 정수물품 부서별 현행화함	현지시정
3	건축 동의	건축허가 등 동의 회신 부적정 ▷ 자동화재탐지설비 대상 정정 회신 통보함 ▷ 용도변경(5층 의료시설) 인명구조기구 현장 확인함	현지시정
4	위험물	위험물제조소등 용도폐지 처리 절차 미흡 ▷ 민원정보시스템상 누락된 용도폐지 대상 관리함	현지시정
5	건축 완공	소방시설별 성능시험조사표 서류 검토 부적정 ▷ 소방용품 형식승인 및 소방시설 평면도 불일치(기존 오기)사항 정정 관리함	현지시정

【 주요 지적 사항 】

[예산·회계-1] 예산·회계 업무처리 부적정

- 세입세출외현금 납입 업무를 결재권자의 결재를 사후에 득하거나 득하지 아니하고 지방재정프로그램에서의 승인만으로 처리하였으며, (온나라)결재·지방재정 관리시스템·세입세출외현금(계좌) 수납일을 상이하게 처리하는 등 세입세출외현금 회계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함.

관련법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「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」제62조(세입세출외현금의 수납절차) ◦ 「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」제3조(정의)
------	--

조치의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(행정상) 【주 의】 ◦ (신분상) 【없 음】 ◦ (재정상) 【없 음】
------	--

- 특근매식비 집행기준(정규 근무시간 개시 최소 1시간 전에 출근하여 근무하거나 근무 종료 후 최소 1시간 이상 근무하는 자 또는 휴일에 최소 1시간 이상 근무하는 자)을 위반하여 매식비를 집행함.

관련법규	◦ 「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」제13조(세출예산 집행 기준)
------	--

조치의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(행정상) 【주 의】 ◦ (신분상) 【없 음】 ◦ (재정상) 【없 음】
------	--

-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집행해야 할 물품을 사무관리비로 집행하여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경비를 부적정하게 집행함.

관련법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「지방재정법」제47조(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) ◦ 「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」제13조(세출예산 집행 기준)
------	--

조치의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(행정상) 【주 의】 ◦ (신분상) 【없 음】 ◦ (재정상) 【없 음】
------	--

[예산·회계-2] 소방장비(차량) 관리 부적정

- 내용연수가 경과한 소방장비(차량)의 연장사용을 성능평가기관의 성능 확인 없이 부적정하게 결정하여 운행함.

관련법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「소방장비관리법」제27조(소방장비의 내용연수) ◦ 「소방자동차 성능평가 및 정밀점검 운영규정」제4조(성능평가의 대상 등)
------	--

조치의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(행정상) 【시 정】 ◦ (신분상) 【없음】 ◦ (재정상) 【없음】
------	---

[건축민원-3] 소방시설공사 완공검사 업무 처리 소홀

- 2021년 6월 10일 개정된 「소방공사 감리 결과보고서」 (별지 제29호) 서식이 아닌 감리업자가 제출한 개정 전(前) 서식을 접수하여 처리하였으며,

관련법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「소방시설공사업법」제14조(완공검사) ◦ 「동법 시행규칙」 제19조(감리결과의 통보 등)
------	--

조치의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(행정상) 【주 의】 ◦ (신분상) 【없음】 ◦ (재정상) 【없음】
------	---

- 2022년 12월 1일 개정된 「소방시설 성능시험조사표」 (별지 제5호) 서식이 아닌 개정 전(前) 서식을 접수하여 처리한 사실이 있음.

관련법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「소방시설공사업법」제14조(완공검사) ◦ 「동법 시행규칙」 제19조(감리결과의 통보 등) ◦ 「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」 제6조(소방시설 종합점검표의 준용)
------	--

조치의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(행정상) 【주 의】 ◦ (신분상) 【없음】 ◦ (재정상) 【없음】
------	---

【 현지 시정 사항 】

[예산·회계-1] 상품권 구매 및 관리 부적정

- 상품권 구매 및 관리 시 「인천광역시 상품권 구매 및 관리 규정」에 맞지 않는 관리대장으로 작성하여 관리하였으며, 인천광역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하는 절차를 미준수는 하는 등 상품권 구매·관리 업무를 소홀히 함.

관련법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「인천광역시 상품권 구매 및 관리 규정」 제6조(상품권 관리) ◦ 「동 규정」 제8조(상품권 구매·사용내역 공개)
------	--

조치의견	◦ 현지 시정
------	---------

[예산·회계-2] 물품관리 부적정

- 자산 취득성 물품을 물품관리시스템에 등재하여 관리하여야 함에도 이를 누락하여 물품을 전산화하여 관리하지 않았고, 부서별 정수를 현행화하지 않는 등 물품관리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.

관련법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제57조(물품의 수급관리계획) ◦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제66조(물품관리 사무의 전산화)
------	--

조치의견	◦ 현지 시정
------	---------

[건축동의-3] 건축허가 동의 등 업무 처리 부적정

- 복합건축물(근린생활/다가구주택) 동의 대상에 대하여 법정 소방시설이 아닌 다른 소방시설로 오기 통보하였으며,
- 근린생활시설에서 의료시설로 용도변경을 신청한 대상에 대해 법정 소방시설을 누락하여 동의 여부를 통보한 사실이 있음.

관련법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「소방시설법」 제6조(건축허가등의 동의 등) ◦ 「동법 시행령」 [별표 4]
------	---

조치의견	◦ 현지 시정
------	---------

[위험물-4] 위험물제조소등 용도폐지 업무 처리 부적정

- 제조소등의 설치, 변경허가 등 위험물 업무를 처리할 경우 소방민원정보 시스템에 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하나, 신고 대상 1개소를 미입력한 상태로 관리함.

관련법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「위험물안전관리법」 제11조(제조소등의 폐지) ◦ 「위험물 예방 행정 처리규정」 제9조(소방민원정보시스템의 관리)
조치의견	◦ 현지 시정

[건축완공-5] 소방시설 성능시험조사표 서류 검토 부적정

- 감리업자가 제출한 소방시설 성능시험조사표 중 항목 「40. 형식승인·성능 인증 확인표」에 대해 시공된 소방용품을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승인현황과 비교한 결과 발신기 등 4종의 형식승인 승인일자가 불일치 하는 등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함.

관련법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「소방시설공사업법」 제14조(완공검사), 제20조(공사감리 결과의 통보 등) ◦ 「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」 제6조(소방시설 종합점검표의 준용)
조치의견	◦ 현지 시정